

부산지방법원 2022. 5. 19 선고 2020가합52678 판결 [계약금등 반환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

피 고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2022. 4. 21.

판 결 선 고 2022. 5. 1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11. 30.부터 2021. 1. 28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5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11. 3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9. 8. 16. 피고와 사이에, 경남 창원군 C 외 6필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28억 원에 매수하되,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시, 중도금 3억 원은 2019. 9. 30., 잔금 23억 원은 2019. 11. 29.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고, 2019. 8. 28.부터 2019. 11. 4.까지 피고에게 위 계약금과 중도금에 해당하는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였다.

나.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① ‘법인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은 잔금시까지 매도인(피고, 이하 같다)이 책임지고 매수인(원고, 이하 같다)에게 소유권이전 해주기로 한다(3항)’, ② ‘묘지이장은 매도인이 잔금시까지 책임진다(5항)’는 내용을 정하였다.

다.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고에게 수차례 위 특약사항의 이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. 이에 피고는 다시 위 특약사항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.

라. 한편, 서울회생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2021. 2. 19. 2021회합10000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고, 2022. 2. 8. 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내렸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3 내지 7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등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하는 바, 위 인정사실 및 민법 제150조(자백간주)1)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5억 원을 받은 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9. 11. 30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1. 1. 28.까지는 연 5%의, 그

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(원고는 5억 원에 대하여 2019. 11. 3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,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)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

김현석

판사 위은숙, 판사 김현정

1)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분을 송달받은 후 2021. 3. 4.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. 따라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.